서 울 고 등 법 원

제 6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09누132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****

서울 *

대표이사 *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*

담당변호사 *

피고, 피항소인 *****공단

서울 *

대표자 이사장 *

소송대리인 변호사 *
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. 4. 17. 선고 2008구합31864 판결

변 론 종 결 2009. 11. 4.

판 결 선 고 2009. 11. 25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- 2. 피고가 2007. 7. 19.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*28,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- 3.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주문 기재와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사업장에 해당한다.

나. 피고는 2007. 6. 18.과 같은 달 21. 원고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각 실시하면서, 원고로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, 2006. 1.부터 2007. 3.까지 사이에 원고의 사업장에 1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*** 등 일용근로자 463명(이하 '이 사건 근로자들'이라 한다)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.

다.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 근무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, 2007. 7. 19.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6. 1.분부터 2007. 3.분까지의 정산보험료와 2007. 7.분 정기보험료 합계 213,228,720원을 부과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 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원수급인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 중 일부분을 시공참여자들에 게 다시 하도급 주었고, 시공참여자들은 독자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원고로부터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. 따라서,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나. 관계법령

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(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두8419 판결참조),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전제로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.

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, 갑 제7 내지 44호증, 갑 제58 내지 72호증, 을 제1, 2,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**건설 주식회사 등 원수급인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사실, 원고가 위 각 공사에 대하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고, 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일자를 일일이 파악하고 그 근태를 확인한 다음 그들의 노무비 단가에 따라 각자의 노무비를 따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, 원고가 이 사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

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,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사실,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 급한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,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시공참여자들이 근무하지 아니한 일자에도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나와 근무를 한 경우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, 위 인정사실만으로,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오히려,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6 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***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와 시 공참여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 터 하도금 대금을 수령한 후에도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고, 이로 인하 여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하도금 대금을 지급한 다음,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 해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각 작성 하고,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, 원고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일자를 파악하고 그 근태를 확인한 이유는 시공참여자들에 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의 정산 및 지급을 위한 것 인 사실, 이 사건 각 시공참여계약서의 대부분에는 '시공참여자는 시공참여자 소속 근 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'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,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 와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실 이 인정된다).

라. 소결론

따라서,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고 그들의 보수에서 건강보험료

를 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황찬현	
	판사	이현우	
	U/1	- Tu I	
	ਜ਼ੀ ਮੀ	시되어	
	파사	이화용	